

# 가스보일러시공자 보험가입의무화 제도시행

## 가. 근거

◆ 도시가스사업법 개정(2003. 5. 27 법률 제6886호)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.

-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(보험가입)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- 생략
2. - 생략
3.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

※ 보험가입 위반자 과태료 500만원 부과

-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②법 제43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공자는-----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.

※ 도시가스사업자가 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함.(별표11)

※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.(별표 17의2)

## 나. 보험약관

◆ 기본보상한도 : 대인배상 사망 1인당 6천만원

대물배상 1사고당 3억원

부상1인당 1천5백만원

- 보험기간 : 1년

- 보험기간 연장 : 휴업,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만료일로부터 12개월 연장

(보험료 미납 등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 된 경우는 제외 됨)

- 특별약관 : ○가스시설시공 작업 도중에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가능.

○사업 양도 시에도 보험이 승계됨

# 가스보일러설치·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

No.

사 용 자	① 성 명		② 전 화 번 호	
	③ 주 소			
	④ 건축물 소재지			
시 공 자	⑤ 명칭 또는 상호		⑥ 시공자등록번호	
	⑦ 대 표 자		⑧ 주민 등록 번호	-
	⑨ 사무소 소재지		TEL	
건 축 물	⑩ 분 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
	⑪ 규 모	건축면적( ), 난방면적( ), ( ) 평형( 세대), (중수 층)		
보 일 러	⑫ 제 조 자 명		⑬ 제 조 번 호	
	⑭ 모 델 명		⑮ 급·배기방식	<input type="checkbox"/> FF, <input type="checkbox"/> FE, <input type="checkbox"/> CF
	⑯ 사용가스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LNG <input type="checkbox"/> LPG	⑰ 난 방 출 력	kcal/h
시 공 내 역	⑱ 배 기 통 재 료	<input type="checkbox"/> ST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⑲ 배 기 통 높 이:	m, 직경: mm
	⑳ 보일러설치장소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용보일러실 <input type="checkbox"/> 배란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
	㉑ 시 공 년 월 일	년 월 일		
시 공 · 확 인 사 항	㉒ 급기구, 상부 환기구의 적합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		
	㉓ 공동배기구, 배기통의 막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	㉔ 가스누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	㉕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정상		
	㉖ 배기가스 적정배기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		
	㉗ 사용교육의 실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실시		
㉘ 기타 특기사항				

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제4-2-2조 제10호(제6-1-2조 제9호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고 이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시공자: (인)

상기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만약 가스보일러 및 관련기기 사용 중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피해발생 시에는 사망(후유장해포함)의 경우 1인당 6천만원, 부상의 경우 1인당 1천5백만원, 재산피해의 경우 3억원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비자의 고의사고 또는 천재지변과 약관상,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
**보험가입기간 : 2005년 11월 13일~2006년 11월 13일**

**\*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기간은 특별약관 제4조에 의거 보험증권만료일부터 1년간 연장 단보함.**

**단체보험가입기관 : 전국보일러설비협회장**



###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

1. 보험계약자 : 전국보일러설비협회
2. 보상내용 :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에 의거 가스보일러 및 관련기기 사용 중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 피해보상
3. 보상한도  
-대인(1인당):사망후유장해/6천만원, 부상/1천5백만원  
-대물(1사고당):3억원

**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**  
대표이사 사장 양 인 집



### 하자담보/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

1. 보험계약자 : 전국보일러설비협회
2. 보상내용 : 시공자의 보일러 완성작업 결함으로 발생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 의한 시공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
3. 보상한도  
-대인대물일괄(1사고당):3억원

**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**  
대표이사 사장 양 인 집



\* 본 확인서가 복사본인 경우 어떠한 사고일지라도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복사하여 사용한 자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게 됩니다.  
(문의처 : 전국보일러 설비협회 02-3401-1497)

\* 상세한 보험계약사항과 보상내용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릅니다.